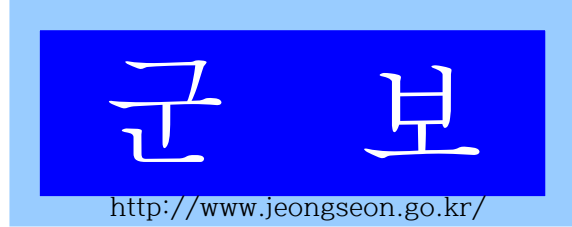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569호 2021. 6. 22. (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2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23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5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5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1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4회 정선군의회(2021. 6. 11.)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5.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4명” 을 “66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3명” 을 “650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54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3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661명</u>----- -----.</p> <p>1. ----- <u>650명</u></p> <p>2. (현행과 같음)</p>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61	661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36	636				
4급	4	3		1		
4급·5급	0	0		0		
5급	31	15	2	4	1	9
6급 이하 계	600	600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1. 제안이유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 아동학대 전담, 지적재조사 전담, 산림병해충방제 전담, 농지업무 전담, 기계설비법 시행대비 전담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54명→ 661명 (증 7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43명→ 650명 (증 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6급이하: (593) ⇒ (600) (증 7명)

제274회 정선군의회(2021. 6. 11.) 및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5.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23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을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에서 정한 규모로” 를 “1마리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를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로 한다.

제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 중 “달성 할” 을 “달성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 하여야” 를 “고시하여야” 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 이라 한다)이 제한구역에서 증축·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다만, 기존 시설과 동일 면적 이내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축사주위” 를 “축사 주위”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조례 제884호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p> <p>4. “사육”이란 가축을 <u>별표에서 정한 규모로</u>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p> <p>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u>건물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u> <단서 신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u> ---.</p> <p>4. ----- <u>1마리 이상</u> ----- ----- -----.</p> <p>5. ----- ----- ----- ----- <u>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u> ---. 다</p>

제3조(제한구역) ①제한구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부제한구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2. 일부제한구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

3. 삭 제

②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신 설>

만,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

제3조(제한구역) <삭 제>

②-----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구역안에서 별표의 가축사육 마릿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가축사육신고서에 의거 사육개시 10일 전에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 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등) ① -----

----- 달성
할 -----
-----.

② -----
----- 고
시하여야 ----.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삭제>

제4조의2(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 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축사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정선군조례 제정 1983.12.29. 정선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이 제한구역에서 증축·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다만, 기존 시설과 동일 면적 이내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

-----.

1. 축사 주위-----
-----.
2. ~ 5. (현행과 같음)

정선군조례 제정 1983.12.29. 정선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③(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 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④(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 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②(경과조치) 삭제

③(종전) 삭제

④(종전) 삭제

[별표]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정선군 전역

1. 주거밀집지역 기준
 - 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양(염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젓소, 사슴, 말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
 - 닭, 오리, 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m 이내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거 밀집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의한 관광지와 관광특구 지정지역 및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7.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수변지역
9. 「지하수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10. 「습지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11.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12. 「하천법」 제7조에 의한 국가,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13.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45m 이내의 지역
1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비고

-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 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대상은 신축시설과 증개축시설에 한정한다.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제한기준이 낮아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 허가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 나. 지목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편입 기준을 달리 두어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간 거리 규정 개정(안 제2조)
-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건물의 외벽 기준 반경 100m
 - 지목이 대지의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 기준 반경 100m
 - 소 사육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가구에서 제외
- 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개정(안 별표)

구 분	주택간 거리(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 이격거리(m)					비고
		소	양, 염소	젓소, 사슴, 말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현 행	50	50~70	75~110	75~110	250~650	400~1,000	
개정(안)	100	100	100	1,000	2,000	2,000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추가(안 별표)

- 상수원보호구역, 국가·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방도 이상 도로 경계로부터 45m 이내, 관광지 및 관광특구로부터 200m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

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의 증·개축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허가,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

마.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 이전 경과조치 등 삭제(부칙)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3조(종전), 제4조(종전)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조의2, 제5조)

규 칙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5. 28.)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5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61	305	11	131	18	93	103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36	302	11	109	18	93	103
지 도 직			20	0	0	20	0	0	0
연 구 직			4	2	0	2	0	0	0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5급	소 계	31	15	2	4	1	4	5
		행정	10	8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3	3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2			2			
		6급	소 계	157	77	3	26	5	21
	행 정		50	31	3		1	6	9
	세 무		4	4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1		11						
환 경	2		2						
사회복지	1						1		

일 반 직	6급	행정·세무	6	4				2	
		행정·사회복지	15	5				4	6
		행정·농업	4			1			3
	6급	행정·녹지	2	2					
		행정·전산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1			1			
		보건·식품위생·간호· 의료기술	1			1			
		행정·환경	4	2				1	1
		행정·시설	6	5				1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1			1			
		농업·시설·녹지	3					3	
		시설·공업	2				2		
		공업·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녹지	5						5
		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8			8			
	보건진료	7			7				
운전·기계운영	3	3							
사무운영·시설관리	2	1			1				
일 반 직	7급	소 계	184	96	1	31	5	23	28
		행 정	56	34	1			8	13
		세 무	8	7					1
		사회복지	12	5				3	4
		전 산	2	2					
		공 업	1	1					
		농 업	3			3			
	수 의	1			1				
7급									

		녹 지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3			3			
		간 호	5			5			
		환 경	4	2			2		
		시 설	21	13		1	1	2	4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3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재	1	1					
		전산·방송통신	2	2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2			2			
		보건진료	3			3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0						
		기계운영	3	1				1	1
		운 전	5	3		1		1	
		사무운영	2	1				1	
		운전·기계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46	67	3	28	6	21	21
		행 정	33	20	1		1	6	5
		세 무	3	3					
	8급	사회복지	11	3		1		1	6
		전 산	0	0					
		공 업	4	2			2		

일 반 직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호	5			5			
		환경	3	2			1		
		시설	18	11			1	4	2
		전산·방송통신	1	1					
		방재안전·환경	2	2					
		행정·세무	5					4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8	4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9			9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0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전	6		1			4	1
		속기	1		1				
	9급	소계	113	44	2	18	1	24	24
	9급	행정	25	12		1		7	5
	9급	세무	3						3
	9급	사회복지	20	6		1		6	7
	9급	공업	4	3			1		
	9급	농업	6			3		2	1
	9급	녹지	2	2					

일 반 직	환 경	2	2					
	보 건	6			6			
	의료기술	1			1			
	시 설	10	7				2	1
	행정·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토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0	0					
	기계운영	1			1		0	0
	열관리 운영	0						
	운 전	15	3	1	4		3	4
	사무운영	5	1		1		2	1
	시설관리	4		1			1	2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0	0	1	0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도직	지도직 소계	20	0	0	20	0	0	0
	4·5급 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5급상당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0					
	5급상당	농촌지도관	1		1			
	6급상당	농촌지도사	18		18			
연구직	연구직 소계	4	2	0	2	0	0	0
	6급상당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1. 제안이유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 아동학대 전담, 지적재조사 전담, 산림병해충방제 전담, 농지업무 전담, 기계설비법 시행대비 전담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54명 ⇒ 총 661명 (증 7명)

나. 조정내역

○ 분야별 증원 : 7명(지역현안 1, 국가정책 6) (단위 명)

기계설비법 시행대비 전담(지역현안)	감염병 대응 (국가정책)	아동학대 전담 (국가정책)	지적재조사 전담 (국가정책)
1명 지방공업서기보 (일반기계) 1	2명 지방간호서기 2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명 지방시설서기보 (지적) 1

산림병해충방제 전담 (국가정책)	농지업무 담당 (국가정책)	
1명 지방녹지서기보 (산림자원) 1	1명 지방농업서기보 1	

○ 부서별 증원 : 7명 (단위 명)

시설국 건설과 (기계설비법 전담)	보건소 (감염병 대응)	행정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전담)	행정국 민원과 (지적재조사 전담)
1명 지방공업서기보 (일반기계) 1	2명 지방간호서기 2	1명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명 지방시설서기보 (지적) 1

시설국 산림과 (산림병해충방제 전담)	농업기술센터 (농지업무 담당)	
1명 지방녹지서기보 (산림자원) 1	1명 지방농업서기보 1	